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6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그 제명이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제명 정비
- 나.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 다.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명시 (안 제4조)
- 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 (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8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25dead@korea.kr

붙임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을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은”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제6조 중 “정신보건시설”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p>	<p style="text-align: center;"><u>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대상자 등----- ----- -----.</p> <p>제2조(정의) ----- --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p> <p>제4조(지원사업)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협력체계 구축) -----</p>

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
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
시설-----

---.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